

서울특별시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1645 |
|----------|---------|

제안년월일 : 2017년 6월 20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항공안전법」의 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고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드론을 통한 공간정보 서비스 사업을 포함하여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조례안의 제명과 문구 중 “무인비행장치”를 “무인동력비행장치”로 수정함(안 제1조 등)
- 나.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계획에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제2항)

서울특별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무인비행장치”를 “무인동력비행장치”로 한다.

안 제2조제2호의 “무인비행장치 산업”을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으로 하고 “무인비행장치”를 “무인동력비행장치”로 하며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

안 제3조 중 “무인비행장치”를 “무인동력비행장치”로 한다.

안 제4조의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무인비행장치”를 “무인동력비행장치”로 한다.

안 제5조의 조명과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중 “무인비행장치”를 “무인동력비행장치”로 하고 제5조제2항제9호를 제5조제2항제10호로 하며 제5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 조명과 제6조제1항부터 제6조제4항까지 “무인비행장치”를 각각 “무인동력비행장치”로 한다.

안 제7조 조명과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중 “무인비행장치”를 “무인동력비행장치”로 한다.

안 제8조의 조명과 본문에서 “무인비행장치”를 “무인동력비행장치”로 한다.

안 제9조 본문의 “무인비행장치”를 “무인동력비행장치”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무인비행장치”를 “무인동력비행장치”로 한다.

안 제10조 제1항에서 “무인비행장치”를 “무인동력비행장치”로 한다.

안 제11조의 본문에서 “무인비행장치”를 “무인동력비행장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원 안 | 수 정 안 |
|---|--|
| <p>서울특별시 <u>무인비행장치</u>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u>무인비행장치</u>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서울특별시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무인비행장치</u>”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기기로써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 비행장치를 말한다.</p> <p>2. “<u>무인비행장치 산업</u>”이란 무인비행장치를 제작·운영하기 위한 산업, <u>무인비행장치를</u>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u>무인비행장치</u>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무인비행장치</u>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p> <p>② 시장은 <u>무인비행장치의</u> 운영과 <u>무인비행장치 산업발전에</u>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p> <p>③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p> <p>제5조(<u>무인비행장치</u> 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u>무인비행장치</u> 산업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u>무인비행장치</u> 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p> | <p>서울특별시 <u>무인동력비행장치</u>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무인동력비행장치</u>”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u>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u> 말한다.</p> <p>2. “<u>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u>” --- <u>무인동력비행장치</u>-----, <u>무인동력비행장치</u>-----.</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u>무인동력비행장치</u>-----</p>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p>② ----- <u>무인동력비행장치</u>-----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p>③ -----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p>제5조(<u>무인동력비행장치</u> 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p>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

| 원 안 | 수 정 안 |
|---|--|
| <p>방향에 관한 사항</p> <p>2. <u>무인비행장치</u>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p> <p>3. <u>무인비행장치</u>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p> <p>4. <u>무인비행장치</u> 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5. <u>무인비행장치</u> 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p> <p>6. <u>무인비행장치</u> 산업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p> <p>7. <u>무인비행장치</u>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p> <p>8. <u>무인비행장치</u>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9. 그 밖에 <u>무인비행장치</u>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6조(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u>무인비행장치</u> 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업을 국가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산업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무인비행장치</u> 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사업 참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u>무인비행장치</u> 산업종사자의 <u>무인비행장치</u> 개발·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u>무인비행장치</u> 관련 연구, 산업 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 <p>-----</p> <p>2.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p>-----</p> <p>3.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p>-----</p> <p>4.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p>-----</p> <p>5.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p>-----</p> <p>6.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p>-----</p> <p>7.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p>-----</p> <p>8.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p>-----</p> <p>9. <u>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u></p> <p>10. -----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p>-----</p> <p>③ (원안과 같음)</p> <p>제6조(무인동력비행장치 -----</p> <p>)① -----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p>-----</p> <p>-----</p> <p>-----</p> <p>② -----</p> <p>-----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p>-----</p> <p>-----</p> <p>③ -----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p><u>무인동력비행장치</u> -----</p> <p>-----</p> <p>-----</p> <p>④ 시장은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p>-----</p> <p>-----</p> |

| 원 안 | 수 정 안 |
|---|--|
| <p>제7조(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 ① 시장은 <u>무인비행장치</u>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무인비행장치</u>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2. <u>무인비행장치</u>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u>무인비행장치</u>의 저변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시장은 <u>무인비행장치</u>의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무인비행장치의 실증단지 조성) 시장은 <u>무인비행장치</u>의 기술의 시범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9조(안전교육) 시장은 <u>무인비행장치</u>의 조정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무인비행장치</u> 조정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u>무인비행장치</u>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p>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u>무인비행장치</u> 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u>무인비행장치</u>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p> <p>제11조(포상) 시장은 <u>무인비행장치</u> 연구,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p>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제7조(무인동력비행장치 -----) ① -----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무인동력비행장치</u> ----- 2. <u>무인동력비행장치</u> ----- 3. ----- <u>무인동력비행장치</u> ----- <p>② -----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p>제8조(무인동력비행장치-----) ---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p>제9조(안전교육) -----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무인동력비행장치</u> ----- 2. <u>무인동력비행장치</u> ----- 3. (원안과 같음) <p>제10조(실태조사) ① ----- <u>무인동력비행장치</u> ----- <u>무인동력비행장치</u> -----</p> <p>② (원안과 같음)</p> <p>제11조(포상) ----- <u>무인동력비행장치</u> --, -----</p> <p>제12조(시행규칙) (원안과 같음)</p> |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서울특별시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
2.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제작·운영하기 위한 산업,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운용과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무인동력비행장치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
 8.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9.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업을 국가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산업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사업 참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종사자의 무인동력비행장치 개발·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무인동력비행장치 저변확대) ①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2. 무인동력비행장치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저변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무인동력비행장치의 실증단지 조성)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기술의 시범 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조정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정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구,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